

## 【 6 】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 운용조례 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4. 9

제출자 : 양주시장

###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융자금중 학자금 융자대상의 확대와 융자금상환 불능자에 대한 상환  
의무를 감면해 줌으로써 생활안정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함임.

### □ 주요골자

가.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대상중 학자금을 2년제 대학이상 재학생에서 입학예정자  
까지 확대 융자할 수 있도록 조항개정 (안 제3조제2항)

나.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융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용자대상)제2항중 “2년제 대학이상 재학생” 다음에 “ 및 입학예정자” 를 삽입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의무를 감면 하여 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조례)

현 행	개 정
<p>제3조(용자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로서 <u>2년제 대학이상 재학생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u>라야 한다.</p> <p><u>&lt;신설&gt;</u></p>	<p>제3조(용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u>2년제 대학이상 재학생 및 일학예정자중</u>  <u>보증인이 현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음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u></p>

##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용자금(이하 “용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자금의 조성) 용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전입금
2. 자금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용자대상) ①용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종 근연, 성실하고 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에 한한다.

1. 생활안정을 위한 영세 상업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주보증금 일부
4.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로서 2년제 대학이상 재학생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용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은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②일반융자금은 세대당 1,000만원이내로 하고 학자금 융자는 년5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한다.

제6조(신청절차)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대상자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액을 수탁금 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만료 후 년 1회씩 균분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은 졸업 후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9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융자금 회수) ①융자금 회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수탁금융기관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 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①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의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시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3조(세입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회수용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4조(중복용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 때
3. 학자금을 받은 대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 한 때

제16조(융자금의 반환 통보) ①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은 60일내의 기간을 주어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은 회수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서 반환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타시군 생활안정자금 감면조치규정

사 군 명	조항	내 용	비 고
의정부시	12조 (보칙)	○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수 있다	
고양시	13조 (보칙)	○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남양주시	12조 (보칙)	○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수 있다	
구리시	12조 (보칙)	○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동두천시	제9조	○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이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이자의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연천군	12조 (보칙)	○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수 있다	

##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융자금 중 학자금 융자대상의 확대와 융자금상환 불능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감면해 줌으로써 생활안정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함임.

### 주요골자

가.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대상 중 학자금을 2년제 대학이상 재학생에서 입학예정자까지 확대 융자할 수 있도록 조항개정 (안 제3조제2항)

나.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융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

### 관계규정 : 해당없음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입법예고 : 2004년 8월 27일 ~ 9. 15일까지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전문

타시군 조례(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통도천시, 연천군등)